의안번호	2213422
의 뢰 인	김상훈 의원
회 답 일	2025.11.10.
추계번호	25E54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노후자동차(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를 폐기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차(경유차 제외)로 교체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70%를 100만원 한도로 감면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6년 1,050억원 등 2026~2027년 동안 1,400억원(연평균 7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단위: 억원)

		2026	2027	누적	연평균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안 제109조의2)		−1,050	−350	−1,400	−700
	개별소비세	−734−	−245	−979	−490
	교육세	−220	−73	−294	−147
	부가가치세	−95	−32	−127	−64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제109조의2(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 8년 이상 소유한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 대상: 2025년 12월 31일 기준, 2017년 12월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소유한 자로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여 신규 등록한 자 – 감면율 및 감면한도: 70%, 신차 1대에 한하여 100만원 *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율 5%(~2025.12.31.까지는 3.5%)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제109조의2(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시행일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특례 적용기간으로 설정

❑ 특례 적용기간 및 개별소비세 징수시점을 반영하여 추계기간을 2026~2027년으로 설정

❑ 노후자동차의 신차 교체비율은 2025년 상반기 특례 시행 시의 교체비율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전제하되, 특례 적용기간이 상이한 점을 고려

○ 2025년 상반기(2025.3.14.~2025.6.30.)에 10년 이상 소유한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의 70%를 신차 1대에 한하여 100만원 한도로 감면하였음

- 2024년 12월 31일 기준 10년 이상 소유한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2025.3.14.~6.30. 신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여 같은 기간 동안 신규등록하는 경우 한시 적용)

❑ 노후자동차 교체로 구입하는 신차의 연료별(가솔린, 하이브리드, 전기 등) 비중은 최근 3년간(2022~2024년) 평균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

○ 동 감면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에 따른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과 중복 적용(친환경차에 대한 감면 적용 후 동 특례가 후순위로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연료별 승용자동차의 세수효과를 구분하여 추계

- 예를 들어,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고 판매가격 7,000만원인 전기자동차(300만원 한도)를 구입하는 경우, 본래 개별소비세 350만원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에 따라 300만원이 감면되고, 남은 50만원에 대하여 동 특례(70% 감면, 100만원 한도)를 적용할 경우 최종적으로 납부하게 되는 개별소비세는 15만원임

❑ 노후자동차 폐차 후 교체되는 신규 자동차는 모두 국산차라고 가정하고, 신차 판매가격은 국산 내수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 이에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1)]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승용자동차 기준판매비율(18%)만큼 차감하여 계산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추계방법

(1) 노후자동차의 신차 교체비율

❑ 2025년 상반기 특례 시행 시 노후자동차의 신차 교체실적 및 특례 적용기간에 따라 개정안에 따른 노후자동차의 신차 교체비율을 1.17%로 추산

○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특례 대상 노후자동차(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는 7,031,110대이며[2)], 이 중 특례를 적용받은 신차 수는 24,625대[3)]이므로, 교체비율은 0.35%로 추산

○ 상반기 특례는 2025.3.14.(2025년 2월 개정세법 시행일)부터 6.30.까지 총 109일간 적용되었으며, 개정안은 2026.1.1.부터 6.30.까지 총 365일간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특례 적용기간에 따라 교체비율을 1.17%로 가정

(2) 감면대상 자동차 수

1) 제조사가 국내 제조물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등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소비자 판매가격에서 유통·판매마진 등을 고려한 기준판매비율(승용자동차 18%, 고급 가구 38.9%, 고급 모피 24.6%)만큼 경감하는 제도로서 2023년 7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분부터 적용

2) 국토교통부, 2024년 12월 자동차 등록자료 통계

3) 국세청 제출자료

❑ 개정안에 따른 특례 대상이 되는 차령 8년 이상(2017.12.31. 이전 등록)의 노후 승용자동차는 10,375,437대이며, 신차 교체비율 1.17%를 적용하여 신차 교체대수는 121,682대로 추산

- 개정안은 노후 자동차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을 2025.12.31.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2025.12.31.이 도래하지 않아 현 시점에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통계인 2025.10.31. 기준 통계를 활용함

[표 2] 차령 8년 이상 노후 승용자동차 등록 현황

(단위: 대)

모델년도	관용	자가용	영업용	합계
~2005	112	675,709	438	676,259
2006	38	154,205	19	154,262
2007	75	285,880	26	285,981
2008	166	346,402	35	346,603
2009	396	407,683	20	408,099
2010	316	698,145	17	698,478
2011	458	821,839	14	822,311
2012	750	1,042,496	21	1,043,267
2013	743	842,731	74	843,548
2014	899	1,071,168	198	1,072,265
2015	1,199	1,205,450	472	1,207,121
2016	2,220	1,585,255	2,074	1,589,549
2017	3,857	1,218,554	5,283	1,227,694
합 계	11,229	10,355,517	8,691	10,375,437

자료: 2025년 10월 자동차 등록자료 통계, 국토교통부 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 최근 3년간(2022~2024년) 내수 연료별 승용자동차 비중은 다음과 같음

[표 3] 최근 3년간(2022~2024년) 내수 연료별 승용자동차 비중

(단위: %)

연도	2022	2023	2024	평균
가솔린	58.4	58.1	53.1	56.5
디젤	11.6	7.9	5.4	8.3
LPG	5.9	4.2	5.1	5.1
하이브리드	15.8	23.3	30.0	23.0
전기	7.5	6.1	6.2	6.6
수소연료전기	0.9	0.4	0.2	0.5

자료: 승용차 연료별 내수 통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자동차산업 동향통계 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단, 이 중 경유차는 동 특례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고 연료별 승용자동차 비중 및 신차 교체대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음

[표 4] 연료별 승용자동차 비중 추정치(경유 제외)

(단위: %, 대)

구 분	가솔린	LPG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연료전기
비중(A)	61.6	5.5	25.1	7.2	0.5
대수(A×121,682)	75,007	6,709	30,547	8,773	64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세수효과 추정

❑ 신규등록하는 연료별 승용자동차의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고 가정

○ 2024년 연료별 승용자동차의 내수 판매실적[4] 1~10위의 평균 공급가액임

– 판매실적에 따른 가중치 적용

○ 단, 각 모델별 기본모델 가격으로 산정하여 과소 추계되었을 수 있음

[표 5] 연료별 승용자동차 평균 공급가액

(단위: 만원)

가솔린	LPG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연료전기
3,382	3,040	3,904	4,190	7,3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승용자동차 기준판매비율(18%)만큼 차감하여 계산

❑ 경감된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연료별 신차 1대당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액 산출

○ 개별소비세 감면액 = 과세표준 × 5% × 감면율 70%

– 친환경차의 경우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한도액(하이브리드 70만원, 전기 300만원, 수소연료전기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발생

○ 교육세 감면액 = 개별소비세 감면액 × 30%

○ 부가가치세 감면액 =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액) × 10%

4) 자동차통계월보(2023년 12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표 6] 연료별 승용자동차 1대당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감면액

(단위: 만원)

구 분	가솔린	LPG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연료전기
공급가액(A)	3,382	3,040	3,904	4,190	7,320
과세표준(B=A×82%)	2,773	2,493	3,201	3,436	6,002
개별소비세(C=B×5%)	139	125	160	172	300
친환경차 감면특례 적용 후 개별소비세(D)	139	125	90	0	0
개별소비세 감면액 (E=D×70%)	97	87	63	-	-
교육세 감면액 (F=E×30%)	29	26	19	-	-
부가가치세 감면액 (G=(E+F)×10%)	13	11	8	-	-
세수효과 합계 (H=E+F+G)	139	125	90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전체 세수효과는 신차 1대당 감면액에 감면대상 연료별 신차 대수를 적용하여 추계

[표 7] 연료별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감면액

(단위: 억원)

구 분	가솔린 (75,007대)	LPG (6,709대)	하이브리드 (30,547대)	전기 (8,773대)	수소연료전기 (646대)	합계
개별소비세	728	59	193	-	-	979
교육세	218	18	58	-	-	294
부가가치세	95	8	25	-	-	127
합계	1,041	84	275	-	-	1,4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징수시점을 고려하여 연간 감면액 추정치의 3/4만큼만 2026년에 반영하고, 1/4은 2027년에 반영

나.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노후자동차(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를 폐기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차(경유차 제외)로 교체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70%를 100만원 한도로 감면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6년 1,050억원 등 2026~2027년 동안 1,400억원(연평균 7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8]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단위: 억원)

		2026	2027	누적	연평균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안 제109조의2)		−1,050	−350	−1,400	−700
	개별소비세	−734−	−245	−979	−490
	교육세	−220	−73	−294	−147
	부가가치세	−95	−32	−127	−64

Ⅳ. 부대의견

❑ 없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신홍철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홍철	02−6788−4745	hongfe@assembly.go.kr